



229 2010. 2. 24.()

조 례

915 -----2
 916 -----2

훈 령

189 -----8

공 고

2010-136 -----9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: : (309-4071)



조 례

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0 2 24

915

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제1항에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공중전화부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0 2 24

91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관리주체”란 「주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- 2. “공동주택단지”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.

3. “보조금”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행정구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(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)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장 시설물 관리 지원등

제4조(지원대상)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단지 내 주도로(보도를 포함한다) 및 가로등·보안 등의 보수
- 2.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
- 3.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
- 4. 그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한도)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해당사업비의 50%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
 - 2.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 - 3.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
 - 4.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
 - 5.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
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제7조(지원대상의 결정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·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,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.

제8조(사정변경 등)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
2.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3.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4.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
5.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
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(보조금의 교부 등)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(정산보고 등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주체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집행사항을 단지 내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정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3장 위원회 등
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.

1.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
2.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
3.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4.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
5.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의회 의원 2명
2. 부구청장과 도시국장을 포함하여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 6명
3. 건축·토목·조경·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담당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·의결에서 제척 된다.

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실비비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부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업 계 획 서

(아파트)

- 1. 사 업 명 :
- 2. 사업목적 :
- 3. 사업추진기간 : 년 월 일 ~ 월 일
 사업시행예정일: . . . 사업완료예정일 : . . .
- 4. 사업내용
 (사업추진경위, 추진방법, 추진할 내용 등 기술)
- 5. 사업효과
- 6. 사업비 산출내역 :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

(단위 : 천원)

사업구분	지출항목	금 액			산 출 내 역	비고
		계	신청액	자부담		
	총 계					
	소 계					
	소 계					
	소 계					

복구청장 귀하

훈 령

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10 2 24

189

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총 147명”을 “총 148명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부산광역시 북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(제7조 관련)

1. 무기계약근로자 정수

부 서 별	계	단순 노무원				도 로 관 리 원	환 경 미 화 원	환경미화원 준용 인력		
		소계	기능보유 노무원	단순조무 인 부	의료급여 관 리 사			소계	공원녹자 산림관리원	체육시설 관 리 원
총 계	135	14	5	7	2	17	95	9	5	4
행정지원과	2	2		2						
문화체육과	4							4		4
재 무 과	2	2	1	1						
민원봉사과	1	1		1						
복지행정과	2	2			2					
청소행정과	95						95			
청정산업녹지과	6	1	1					5	5	
도시디자인과	13					13				
재난안전관리과	1	1	1							
건 설 과	4					4				
주차관리팀	1	1		1						
문화빙상센터	3	3	2	1						
의회사무국	1	1		1						

2. 청원경찰의 정수

부서별	합 계	경비청원경찰	단속감시 청원경찰			
			소 계	녹지훼손단속	하천감시	그린벨트단속
총 계	13	7	6	1	3	2
행정지원과	2	2				
청정산업녹지과	1		1	1		
건 설 과	5		5		3	2
도시디자인과	2	2				
디지털도서관	3	3				

공 고

부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 제6조(공인의 등록), 제11조(공인의 재등록및 폐기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의 신조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

2010 2 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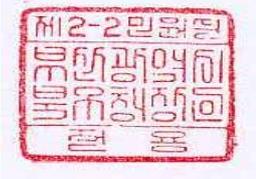
2010-136

1. 신조공인사항
 - 사용개시일 : 2010. 3. 8(월)
 - 신 조 사 유 :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회계명 변경
 - 신조공인인영 : 별첨 참조
2. 폐기공인사항
 - 폐기개시일 : 2010. 3. 8(월)
 - 폐 기 사 유 : 통합민원실 설치 및 회계명 변경
 - 폐기공인인영 : 별첨참조

【 신조공인 인영 】

공 인 명	규격(서체)	인 영	최초사용일	비고
국토해양부소관광역시·지역발전 특별회계부산광역시북구수입 징수관인	2.0cm×2.0cm (한글전서체)		2010.3.8	

【 폐기공인 인영 】

공 인 명	규격(서체)	인 영	최초사용일	비고
제2-2민원실부산광역시북구청장 인전용	2.4cm×2.4cm (한글전서체)		1995.1.1	
제2-2민원실부산광역시북구청장 인전용 (인증기)	2.4cm×2.4cm (한글전서체)		2003.12.1	
국토해양부소관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부산광역시북구수입징수관인	2.0cm×2.0cm (한글전서체)		2008.5.1	